

#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세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5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21일  
발 의 자 : 이세열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기대, 김재형, 김정태,  
김제리, 김태수, 김희걸,  
박기열, 박상구, 성흠제,  
송아량, 양민규, 이광호,  
이병도, 이영실, 이정인,  
장상기, 최 선, 최웅식,  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0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징수법」 상 ‘결손처분’이 ‘정리보류’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세징수법」 상 용어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체계 정비(안 제2조제2항제1호 개정, 제3조제9호 신설, 안 제4조 삭제)
- 나. 조례 조문체계 정비에 따른 근거조문 개정(안 제5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“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”을 “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”으로 한다.

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정리보류(기존 결손처분 포함)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,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.  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제4조”를 “제3조제9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----- -----, 체납 또는 결 손처분 자료 제공, ----- -----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3조(지급기준)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, 체납 또는 정 리보류 자료의 제공,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지급기준)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 례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 체납액 중 정리보류(기존 결 손처분 포함)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는 제2조제1항제3호의 지급대 상이 되는 징수액의 1,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제4조(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 에 대한 지급기준) 「서울특별 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3조제2 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 처분(부분결손 제외)된 고액체 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</p>	

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,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한도) ①·② (생략)

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부과 기준에 따라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.

④ (생략)

제5조(지급한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3조제9호-----  
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